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9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강준현 · 김문수
김한규 · 민형배 · 박군택
박수현 · 서삼석 · 전진숙
정준호 · 정진욱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.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, 온라인 커뮤니티,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,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.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,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,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

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·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,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(안 제9조의10 신설).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10(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조치의 요청)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”라 한다)를 통하여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광고에 대한 차단·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10(불법사금융업자의 <u>광 고에 대한 조치의 요청</u>) 금융 위원회는 <u>불법사금융업자가</u> <u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 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”라 한다)를 통하여 제9조 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광고에 대한 차단·삭제 등 적 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